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899호 2012. 6. 18.(월)

## 차 례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2-682호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2-683호 인천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0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2-691호 인천광역시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9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2-695호 신조 공인 공고 ----- 34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032-560-4140]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 - 682호

##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2일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 2. 개정이유

○ 음식물쓰레기 관리의 방향을 수집·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 사후 관리적 방향에서 발생 단계에서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발생억제 조항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억제 방안으로 종량제 실시 및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등으로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 3. 주요 개정내용

-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
-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조항 신설(제8조)
  -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발생 억제 우수가구나 업소에 대한 보조금 및 시설 지원
  -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시 발생억제방안 명시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관련 세부사항 명시(제10조)
  - 음식물류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하고, 배출량

- 범위에 따라 수수료 요율을 차등할 수 있도록 개정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세대당 월 930원에서 킬로그램당 40.32원, 리터당 31원으로 부과 징수
-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 강화
- 감량 의무사업장에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 변경(제2조)
  - 다량배출사업장 중 휴게 및 일반음식점 사업장 면적 기준을 125㎡에서 200㎡로 확대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적은 사업장의 신고의무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제2조)
  - 감량 의무이행신고 시 발생억제방안 명시(제8조 및 제16조)
  - 위탁재활용자에게 배출량에 비례한 수거 수수료 지불(제16조)
  -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뿐만 아니라 종량제 시행여부 및 발생억제방안도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제17조 및 제18조)

####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7. 2(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청소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 의견 보내 주실 곳

- (우)404-701/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번지(심곡동 244번지) 서구청 청소행정과
- 전화 : 032-560-4413, 팩스 : 032-560-2760
-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www.seo.incheon.kr](http://www.seo.incheon.kr)/고시·공고)

붙임 1. 규제영향분석서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사업장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휴게음식점 중 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과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하여 판매하는 증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이나 단체 등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여야 하

며,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봉투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 판매가격, 부피(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 고지 및 충전카드 인출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무게에 의한 경우 킬로그램당 40.32원, 부피에 의한 경우 리터당 31원으로 하고, 용량별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⑥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전용봉투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쉬운 색상으로 하며, 김장철 등 일시적 다량 배출시기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제작·보급토록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다세대주택 등 5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의 일정지역 단위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자가 공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주체를 정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구청장에게 그 뜻을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청결 위생관리를 위하여 위탁세척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세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세척비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

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생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을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 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계약서에는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은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 의무 이행 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 의무 이행 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 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별표 1]

## 재활용가능한 음식물류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9조제1항 관련)

## 1. 재활용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가. 식품 쓰레기

나. 조리 전, 후의 음식물찌꺼기

## 2.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해서는 안 되는 것

구 분	품 목
채소류	-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 고추씨, 고추대 -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등의 껍질, 옥수수대
과일류 및 견과류	-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의 씨 -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질 - 호두, 밤, 땅콩, 도토리 등의 딱딱한 껍데기
어패류	- 조개, 소라, 전복, 꼬막, 굴 등 패류의 껍데기 - 게, 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멍게 껍데기 - 생선뼈
곡류	- 보리, 쌀, 콩 등의 왕겨
육류	- 소, 돼지, 닭 등의 털과 뼈다귀
알류	- 계란, 오리알, 메추리 알 등의 껍데기
기타	- 1회용 티백을 포함한 각종 차류의 찌꺼기 - 한약재 및 과일즙 찌꺼기

## 3.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

가.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나.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은 행구어 배출

다. 통무, 통호박, 통배추는 원형 그대로 버릴 경우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하나, 잘게 부수면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 가능

라. 수박, 망고 등 부피가 큰 과일은 잘게 썰어서 배출

마. 비닐, 병뚜껑, 나무젓가락 등 이물질과 패각류, 복어내장, 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고 포장되어 있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별표 2]

## 과태료 부과기준(제19조제1항 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폐기물 관리법	1.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 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 관련)			
	가.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	20	30	50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0	70	100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법 제15조 제3항)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다.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①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30	40	60
	②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	60	80	100
	라.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발생억제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0	30	50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등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30	50	100

[별표 3]

##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 가격(제10조제3항 관련)

## 가. 납부필증 가격

구 분	표시용량(ℓ)	가격(원)	비 고
개별용기	3	100	
	5	160	
공동배출 용기	60	1,860	
	120	3,720	

## 나. 전용봉투 가격

구 분	표시용량(ℓ)	가격(원)	비 고
음식물류 폐기물 (김장쓰레기) 전용봉투	20	620	

<별지 제1호서식> (앞면)

<b>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b>						<input type="checkbox"/> 신고서 <input type="checkbox"/> 변경신고서		처리기한 즉시
신 고 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사업장)			(전화 : )				
사 업 장 규 모	<input type="checkbox"/>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input type="checkbox"/> 음식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m <sup>2</sup>		
	<input type="checkbox"/>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m <sup>2</sup>		
	<input type="checkbox"/>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m <sup>2</sup>		
	<input type="checkbox"/>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								
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				kg/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								
처리 계획								
⑨ 자가 처리계획	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				⑮ 건조 부산물 처리			
	⑪ 처리방법	⑫ 처리능력	⑬ 설치 신고일자	⑭ 처 리 량	⑯ 부산물 발생량	⑰ 처리방법	처리자	
	kg/일		kg/일		kg/월			
⑱ 자가재활용계획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kg/월							
⑲ 위탁재활용계획 (계약서 첨부)	위탁 재활용량	위탁 계약비용	위탁 업소명	업 종	재활용 방법	위탁업소 주소·전화		
	원/kg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input type="checkbox"/> 신고서 를 제출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								
상 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전화 : )		
발생억제계획								
처리계획	처리예상량	처리방법	설치신고일	재활용장소	위탁업소명	위탁업소주소(전화)		
자가처리	kg/일							
자가재활용	kg/월							
위탁재활용	kg/월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㉑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작성요령>

- ⑦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이 1일 300kg이상인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⑧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집단급식소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콘도 등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	소포장 농·수·축산물 판매 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시장	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통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 ⑪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 항목에는 1) 가열 또는 건조 2)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⑫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 항목에는 감량시설의 용량을 기재합니다.
- ⑭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 항목에는 실제 처리하는 양을 기재합니다.
- ⑮ 부산물이란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뜻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 ⑰ 자가재활용 계획 항목은 자체적으로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⑲ 위탁재활용계획 항목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위탁계약 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첨부제출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2호서식 >

<b>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b>								
사업장명 :								(단위 : kg)
연월 일	발생 량	자가처리			재활용			
		자가 처리방법	자 가 처리량	처리량 누 계	재활용량	재활용 방법	재활용자	누 계

< 작성요령 >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처리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 - 683호

## 인천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2일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1. 규 칙 명

- 인천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시행규칙

#### 2.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3. 주요 개정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일시 및 배출장소 지정(제3조)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납부필증 제작기준 변경(제5조, 제6조)
- 전용수거용기 및 납부필증 판매 수수료 명시(제8조)
- 공동배출 신청자의 이행사항 명시(제10조)

#### 4.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7. 2(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청소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 의견 보내 주실 곳

- (우)404-701/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번지(심곡동 244번지) 서구청 청소행정과
- 전화 : 032-560-4413, 팩스 : 032-560-2760
-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www.seo.incheon.kr](http://www.seo.incheon.kr)/고시·공고)

붙임 인천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 인천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지정)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인천광역시 서구 전 지역으로 한다.

제3조(배출일시 및 장소)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일시 및 장소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계절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배출일시 및 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권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필증을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월 10리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이하 “전용봉투”라 한다)의 규격은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일반용 봉투의 제작기준을 준용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의 제작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한 쓰레기봉투 지정 판매소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색상, 규격, 제작 및 사용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납부필증은 전용수거용기의 용량에 따라 분류하고 종류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납부필증의 종류 및 제작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구청장은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납부필증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때나 수거가 필요할 때마다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납부필증의 검수 및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납부필증 스티커의 제작업체에서 납부필증을 납품받을 때 제작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후 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납부필증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 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납부필증, 전용봉투 및 개별용기의 공급 및 판매) ① 구청장은 납부필증 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납부필증 판매소로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납부필증 판매소에 판매수수료에 해당하는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는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9조(납부필증 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납부필증 판매자는 납부필증을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주민편의를 위하여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충분한 확보
2. 불법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진열 및 판매 금지
3.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교환 및 환불
4. 그 밖의 행정지시사항

② 납부필증 판매와 관련하여 제1항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지정판매소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공동배출 신청자의 이행사항)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동배출 신청서 제출
2.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 준수 및 전용수거용기 관리
3. 구청장이 정하는 수수료의 납부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별표 1]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시간 및 배출장소 등  
(제3조제1항 관련)

## 1. 개별용기 배출

구 분	배 출	수 거
일자(요일)	일, 화, 목/월, 수, 금(주3회)	월, 수, 금/화, 목, 토(주3회)
시 간	20:00~24:00	00:00~06:00
장 소	주택 및 업소 문전	주택 및 업소 문전

## 2. 공동용기 배출

구 분	배 출	수 거
일자(요일)	제한 없음	월, 수, 금/화, 목, 토(주 3회)
시 간	제한 없음	00:00~06:00
장 소	전용수거용기 설치 장소	전용수거용기 설치 장소

## [별표 2]

##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제작기준

(제5조제1항 관련)

1. 재질 : 플라스틱(PP, HDPE)

2. 규격

종류(주 용도)	내부용량 (ℓ)	색상	구 조	비고
단독주택 및 소규모 사업장	3	몸체-회색 뚜껑-주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뚜껑과 몸체 일체형</li> <li>- 운반·이동용 손잡이 부착</li> <li>- 손잡이 달린 거름망 내부용기 탈·부착</li> <li>- 용량은 내부용기에 의함</li> </ul>	
	5			
공동주택용	60	초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뚜껑과 몸체 일체형</li> <li>- 운반·이동용 손잡이 및 바퀴 부착</li> <li>- 기계식 상차 가능</li> </ul>	
	120			

주<sup>1)</sup> 배출량에 따라 용량을 선택하여 사용 가능3. 외부 표시사항(뚜껑, 몸체) : 기관명과 문장, 용기의 종류 및 용량, 주의사항, 배출자  
기재난 등

## [별표 3]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기준**  
(제6조제2항 관련)

구 분	규 격	색상	표 시 사 항	비고
3ℓ	가로 70mm 세로 45mm	연두색	기관명과 문장, 표시용량, 주의사항, 제작일련번호 및 전자인식부호(바코드) 등	
5ℓ	가로 70mm 세로 45mm	연분홍		
60ℓ	가로 90mm 세로 65mm	살구색		
120ℓ	가로 90mm 세로 65mm	연노랑		

## [별표4]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전용봉투 및 개별용기 판매 수수료**  
(제8조제3항 관련)

구분	규격	판매가격	공급가격	판매수수료율(%)	비고
납부필증	3ℓ	100원	93	7	
	5ℓ	160원	148	7.5	
	60ℓ	1,860원	1,730	7	
	120ℓ	3,720원	3,460	7	
전용봉투	20ℓ	620원	577	7	
전용수거용기	3ℓ	조달가+판매수수료	조달가	10	
	5ℓ	조달가+판매수수료	조달가	10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 - 691호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06월 13 일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및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가 일부개정 공포 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재정비하고,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보육사업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 영유아보육법 관련용어 재정비

- ▶ 시설장 ⇒ 원장
- ▶ 보육시설의 장 ⇒ 어린이집 원장
- ▶ 종사자 ⇒ 교직원
- ▶ 공립보육시설 ⇒ 구립 어린이집
- ▶ 보육시설 ⇒ 어린이집

##### ○ 제18조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설치되는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조항 신설

##### ○ 제19조 (보육정보센터 구성)

- 보육정보센터의 센터장 및 종사자의 구성에 관한 사항

##### ○ 제20조 (보육정보센터 기능)

- 보육정보센터에서 수행 할 수 있는 업무 규정(보육교직원 상담

구인·구직,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상담, 육아정보 제공 등)

○ 제21조 (보육정보센터 지도·감독)

-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확인 검사할 수 있는 규정

○ 제22조 (비용)

-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 규정

###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07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가정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5721) 또는 Fax(560-2744)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로 하고,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서구의”로 하며, “인천광역시 서구 보육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서구 보육정책 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서구 보육정책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 원장”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공립 보육시설”을 “구립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보육시설 장”을 “어린이집 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전입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

다.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중 “공립보육시설”을 각각 “구립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2조 및 제13조, 제15조, 제17조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2조 및 제13조 중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 원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시설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제13조 및 제14조, 제16조 중 “종사자”를 각각 “교직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제15조”를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 등의”를 “그 밖의”로 한다.

제18조를 제23조로 하고,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한 모든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영유아 및 아동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우선적인 심사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19조 (보육정보센터 구성)** ①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보육전문교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

사, 그 밖에 필요한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② 보육정보센터의 종사자는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와 제15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18조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센터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면하고, 보육전문요원 등 기타 종사자는 센터장이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보육정보센터 기능) 보육정보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과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과 교육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 (보육정보센터 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장부와 서류 등을 확인·검사 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비용)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 - 695호

## 신조 공인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한 공인의 인영을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6. 18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 1. 공인신조 사유

- 2012. 7. 9 청라2동 개칭 및 청라동 명칭 변경
- 인천광역시서구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10조

#### 2. 공인의 사용 예정일






- 청라 1, 2동 공인 : 2012년 7월 9일
- 인천광역시서구공유토지분할위원회인 : 2012년 6월 25일

#### 3. 신조공인 인영 : “별첨 참조”

## 신조공인 인영

연 번	신조 공인명	규 격	인 영	비 고
1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청라1동민원전용	2.4X2.4		2012.7.9 동명칭 변경 (청라동→청래동)
2	청라1동장인	2.1X2.1		"
3	청라1동장인/민원전용	2.1×2.1		"
4	인천광역시서구청라1동 징수관인	2.0X2.0		"
5	인천광역시서구청라1동 경리관인	2.0X2.0		"

# 신조공인 인영

연 번	신조 공인명	규 격	인 영	비 고
6	인천광역시서구청라1동 분임경리관인	2.0X2.0		2012.7.9 동명칭 변경 (청라동→청라동)
7	인천광역시서구청라1동 물품관리관인	2.0X2.0		"
8	인천광역시서구청라1동 물품출납원인	1.8X1.8		"
9	인천광역시서구청라1동 지출원인	2.0×2.0		"
10	인천광역시서구청라1동 일상경비지출원인	1.8X1.8		"






# 신조공인 인영

연 번	신조 공인명	규 격	인 영	비 고
11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청라1동민원전용(인증기)	2.4×2.4		2012.7.9 동명칭 변경 (청라동→청라동)
12	청라1동장인 /민원전용(인증기)	2.1X2.1		"
13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청라1동민원전용2(인증기)	2.4X2.4		"
14	청라1동장인 /민원전용2(인증기)	2.1X2.1		"
15	인천광역시공유토지분할 위원회인	3.6×3.6		공유토지분할 에관한특례법 제10조에 의거 (토지정보과)




# 신조공인 인영

연 번	신조 공인명	규 격	인 영	비 고
16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청라2동민원전용	2.4X2.4		2012.7.9 청라2동 개청
17	청라2동장인	2.1X2.1		"
18	청라2동장인/민원전용	2.1×2.1		"
19	인천광역시서구청라2동 징수관인	2.0X2.0		"
20	인천광역시서구청라2동 경리관인	2.0X2.0		"

# 신조공인 인영

연 번	신조 공인명	규 격	인 영	비 고
21	인천광역시서구청라2동 분임경리관인	2.0X2.0		2012.7.9 청라2동 개청
22	인천광역시서구청라2동 물품관리관인	2.0X2.0		"
23	인천광역시서구청라2동 물품출납원인	1.8X1.8		"
24	인천광역시서구청라2동 지출원인	2.0×2.0		"
25	인천광역시서구청라2동 일상경비지출원인	1.8X1.8		"

## 신조공인 인영

연 번	신조 공인명	규 격	인 영	비 고
26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청라2동민원전용(인증기)	2.4×2.4		2012.7.9 청라2동 개청
27	청라2동장인 /민원전용(인증기)	2.1X2.1		"
28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청라2동민원전용2(인증기)	2.4X2.4		"
29	청라2동장인 /민원전용2(인증기)	2.1X2.1		"